

부산광역시박물관협의회 회칙

2009. 6.30. 회칙승인
2014.11.27. 변경승인
2015.11.26. 변경승인
2016.11.29. 변경승인
2017.12.19. 변경승인
2018.12.27. 변경승인
2019. 5.18. 변경승인
2021. 3.24. 변경승인
2023. 3. 8. 변경승인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부산광역시박물관협의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국제명칭은 THE KOREAN MUSEUMS ASSOCIATION OF BUSAN CITY.라 하고 영문약자는 KMAB로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이 정하는 바의 자격요건을 갖춘 비영리 목적의 박물관·미술관 협의체로서 건전한 박물관·미술관 활동을 통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내의 박물관·미술관 상호간의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및 제도적 보호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부산광역시 내의 박물관·미술관의 발전을 위한 자료교환 및 지원사업
2. 박물관·미술관 운영에 관한 자문 및 전시 지원사업
3. 박물관·미술관 전문직원에 대한 교육 및 양성
4. 공동 연구발표회 관련 학술지 및 회지 발간에 관한 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기관으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

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정기총회 혹은 임시총회나 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인준한다.(2015.11.26. 개정)

1. 정회원 :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부산광역시내 등록박물관·미술관
2. 준회원 :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부산광역시내 미등록박물관·미술관
3. 특별회원 : 본회의 설립 목적에 찬성하는 개인 및 단체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의결권의 행사는 정회원으로 하며 각 회원기관 단위로만 행사할 수 있다.
2. 회원은 본회의 회칙의 준수 및 총회·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의무를 가지며 본회의 발전과 사업수행을 위한 소정의 발전기금 또는 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자격상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회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및 회원 단체가 해산되었을 때 임원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2. 자격을 상실한 회원 및 그 상속권자 등은 본회에 이미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이나 그 밖의 기여에 대한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조직

제7조(조직의 구성)

본회에는 임원회와 총회를 두며 임원회는 총회의 중요 의결사항을 제외한 본회의 업무 제반사항을 논의, 결정하며 고문 및 필요한 경우 특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임원의 구성)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감사1인

제9조(임원의 선임)

1. 본회 임원 중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2. 회장이 임기 중 유고일 때에는 임원회의에서 부회장 중 1인을 선임하되 그 임기는 차기 총회까지로 한다.
3. 감사가 임기 중 유고일 때에는 임원회의에서 선임하되 그 임기는 차기 총회까지로 한다.

4. 단, 총회에서 차기 임원이 이미 선임되어 있는 중에 현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해당 차기 임원 피선임자가 승계하되, 그 임기는 차기 임기까지로 한다.
5.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 개시는 선출 차년도 회계연도 개시와 같다. 다만 회장 유고 시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이면 총회에서 재선출한다.(2019.05.18. 개정)

제11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임원회의 기능)

1. 사업의 계획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의결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기타 중요 사항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1. 사무국은 회장이 속한 기관에서 운영한다. 단,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에 둘 수 있다.
2. 사무국은 회계업무 및 사업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014.11.27 신설)

제4장 총회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기준일인 1월 1일 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기관회원 1/3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의 기능)

1. 임원의 선출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4. 기타 중요 사항의 의결

제18조(총회의 의결)

1. 총회의 의결권은 정회원으로 한다.
2. 총회는 재적회원기관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기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9조(재원) 본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그 세출을 총당한다.

1. 지원금
2. 발전기금 및 제부담금
3. 회비 국립(1,000,000원). 공립(300,000원). 대학·사립(100,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2023.3.8 개정)

제20조(예산과 결산)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 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제22조(경비지출)

모든 임원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소한의 비용은 지불할 수 있다.

제23조(기타사항)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6장 부칙

본 회칙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변경 회칙은 2014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변경 회칙은 2015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변경 회칙은 2016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변경 회칙은 2017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변경 회칙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변경 회칙은 2019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변경 회칙은 2021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변경 회칙은 2023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